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시 자본금 기준 충족 등〉
■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8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시 자본금 기준 충족 등	3

I. 개요

1.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18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11.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이송업자가 난립하고 있으며, 재무상태가 부실한 일부 이송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후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응급이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음.

응급이송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인만큼 이송업자가 응급이송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바 이송업 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

여 이송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응급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시 자본금 기준 충족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안 제51조제1항),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 ----- ----- --시설 및 자본금----- ----- ----. ----- ----- ----- -----.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②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⑥ -----제5항-----

-----.

⑦ -----제4항-----

-----.

⑧ -----시설 및 자본금-----.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 하위법령에 규정된 응급환자이송업¹⁾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송업 허가 신청자”)의 자본금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송업 허가 신청자가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고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이송업 허가 신청자는 법 제51조제1항²⁾에 따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동 규칙 제8조³⁾ 및 [별표 3]에서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에는 “자본 기준(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포함되어 있음([별표 3] 별첨).
- 자본금 기준은 이송업체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자본금만으로는 해당 업체의 전반적인 경영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응급환자이송업에 재무상태가 검증된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응급이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응급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다만, 현행 하위법령에서 이송업 허가 신청자의 자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금 또는 재무상태 관련 서류의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정책적으로 법률 또는 하위법령으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항공사업법」⁴⁾은 항공운송·사용·정비 등 사업의 면허(등록) 기준의 하나로 일정한 자본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자본금 50억원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7억원 이상, 항공기정비업·항공기취급업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 등

4) 「항공사업법」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제10조(소형항공운송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국토부 공동부령에서 이송업 허가 기준으로 ①시설, ②보유 구급차, ③자본, ④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자본 기준만 법으로 상향하고 제출 서류를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부적절하므로 불수용 의견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	--

	구 분	내 용
1. 시설 기준	가. 사무실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차고 및 차고부대 시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의 바닥을 포장(鋪裝)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교육훈련 시설	응급구조·응급처치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통신시설	1) 사무실 내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구급차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보유 구급차 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자본 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의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인력 기준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